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73호 2019. 6. 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210호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삼척시 조례 제1211호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5호 근덕면 선도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 15
- 삼척시 고시 제67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16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02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
- 삼척시 공고 제503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제21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5.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 척 시 장 김 양 호

2019년 6월 5일

삼척시 조례 제1210호

###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는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서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제5조 앞에 “제 2 장 건축위원회”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전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전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주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5조) 본문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삼척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적용의 완화)”로 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마을회관 및 경로당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
  4.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30을 적용한다.
-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 ⑥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2.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7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제18조 앞에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을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영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의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예치금”을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를 “건축공사비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기간”을 “12개월”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6항 후단 중 “건축공사비는”을 “보증기간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외주차장, 관광지, 운동시설 등의 관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제22조제4항 중 “제3호,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와 이 조례”를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비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을 위한 건축물의 중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중별 구분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같은 조 제11항에 의한 감리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용승인(임시사용)신청서의 공사감리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갈음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제 4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제 3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3”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9조 앞에 “제5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을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긴의자
- 2. 파고라
- 3. 시계탑
- 4. 분수
- 5.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6. 소규모 공중화장실(연면적 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합의한 것에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제34조 앞에 “제 6 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을 “제 5 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한다.

제35조 앞에 “제 7 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을 “제 6 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3개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쳐고, 각 지역의 대지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앞에 “제 8 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제 9 장 건축물의 높이”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 각”을 “영 제86조제3항 각”으로,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으로,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을 “및 도시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으로, 전단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후단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재해주택을 복구하면서 정복”을 “정복”으로 한다.

제41조 앞에 “제 10 장 건축협정”을 “제 7 장 건축협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0조의5제5호”를 “영 제110조의6제5호”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결합건축 대상지 제외)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의 경관형성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2조 앞에 “제 11 장 보칙”을 “제 8 장 보칙”으로 한다.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제43조,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43조)제1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회”를 “5회”로 한다.

제42조의2(중전의 제43조의2)제1항제1호 중 “6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5”를 “9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0”을 “10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0”을 “70”으로 한다.

제42조의3(중전의 제43조의3)제2항 중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마을회관 및 경로당
3. 주거용 목적의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것(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46조 및 제47조로 하고,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업무를 말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2.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용자 및 보조
3. 우수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3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 위원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 지]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떨어져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떨어져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 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m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m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m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16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	· 3m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3m 이상 · 연립주택 2m 이상 · 다세대주택 1m 이상
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종합병원을 제외한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1m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m 이상, 외벽선 1.5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m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1m 이상, 외벽선 2m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m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m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3m 이상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운송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16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3m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6m 이상 · 연립주택 3m 이상 · 다세대주택 2m 이상
바. 기타 건축물 (1) 의료시설(정신병원·격리병원·요양병원에 한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 한다.), 장례시설 (2)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한다), 업무시설, 위탁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업무시설, 위탁시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모든 건축물(「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적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3m 이상 · 2m 이상 · 1m 이상 · 0.5m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m 이상, 외벽선 1.5m 이상)

제210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5. 21.)에서 의결된 삼척시 마을회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척시장 김양호

2019년 6월 5일

삼척시 조례 제1211호

###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을회관 냉·난방시설 지원

제6조제1항 단서 중 “천재지변의”를 “천재지변 및 사용상 긴급한 보수를 요하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조금 지급방법”을 “보조금 지급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을(회)은 사업을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사진(전, 중, 후))
2. 마을(회) 통장(보조금전용) 사본 등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 2019 - 65호

### 근덕면 선도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고시

『근덕면 선도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의2, 3, 제4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5.

### 삼척시 장

1. 사업의 명칭 : 근덕면 선도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바람직한 농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사업비 : 8,000백만원
  - 국비 (5,600백만원), 지방비(2,4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일원
  - 기초생활기반확충
    - 중심가로정비, 장터주차장 조성, 낭만센터 신축, 공용주차장 정비, 시니어 낭만제작소, 주니어 낭만 키움터, 배후지역 DID설치
  - 지역경관개선
    - 낭만장터 정비, 느티나무 소공원 정비,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정비, 낭만가로 조성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마을홍보, 지역활성화 지원, 마을경영지원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6.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5개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 033-570-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67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철거)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7.

삼척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162(자원동)의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6.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07-1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162 (자원동)	20190607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 명칭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26-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405	20190607		20090626	일련번호방식 (고천길분기)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391-21		20190607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고천길분기)
4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17-2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4길 42 (사직동)	20190607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 (사직로분기)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151-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길 86-69	2019060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51-1, 25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100	2019060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52-2, 251-2, 25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98	2019060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8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89-3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2길 72-41 (원당동)	20190607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 (원당로분기)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8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107-1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162 (자원동)	20190607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26-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405	20190607		20090626	일련번호방식(고천길분기)	
폐기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391-2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405	20190607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고천길분기)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317-2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4길 42 (사직동)	20190607		20090626	일련번호방식적용(사직로분기)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151-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길 86-69	2019060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51-1, 252-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100	2019060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52-2, 251-2, 251-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98	20190607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8	강원도 삼척시 원당동 89-3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2길 72-41 (원당동)	20190607		20090626	일련번호방식활용(원당로분기)	

삼척시 공고 제2019-502호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 삼척시장

##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조례 제4조제1호 개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월 200,000원
  - 단서신설 : 제4조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의견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570-3314 / FAX : 033-570-3130

##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복지정책과(전화 033-570-3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1부.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호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100,000원”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지원사업)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단서 신설>	제4조 (지원사업) ----- ----- ----- 단, 제1호에 따 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 당(이하“참전명예수당”이라한다) 월 100,000원 지급	1. ----- -----월 200,000원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b>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삼척시장 귀하</b>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참전유공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b>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예금종류	
	주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삼척시장 귀하</b>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존처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규칙 제명 :
- ▣ 의견제출자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9-503호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 삼 척 시 장

#### 1.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인상(조례 제7조제4호 개정)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월 200,000원
  - 단서신설 : 제7조제4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 포함.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570-3314 / FAX : 033-570-3130

### 4. 그 밖의 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복지정책과(전화 033-570-3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2. 검토의견서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호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7조제4호 중 “월 100,000원”을 “월 2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lt;단서 신설&gt;</u>	제7조 (복지지원 등) ----- ----- 단, <u>제4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훈명예수당 : <u>월100,000원</u>	4. ----- <u>월 200,000원</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번호								-					
<b>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b>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_____ (전화번호 _____)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p>「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___년 ____월 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b>삼척시장 귀하</b></p> <p>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p>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p>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국가보훈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사망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훈처로부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경우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명예수당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급 불가)

\* 위 사항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규칙 제명 :
- ▣ 의견제출자 :

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